

제안요청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2024. 7.

국토교통부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1
II. 주요 과업 내용	2
III. 과업 수행지침	4
IV. 사업자 선정방안	11
V.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3
VI. 제안서 작성방법	16
VII. 양식모음	17

I. 연구용역 개요

1. 과업명 :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2. 과업배경 및 목적

- 전국 50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전체 고용의 46.6%, 생산액의 54.79%, 수출액의 54.74% 담당 (2023년 4분기 기준)
 - 2023년 3월에는 총 15개소(4,076만㎡)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정책적 중요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
- 국가산단의 장기적인 공급방향을 검토할 필요
 - 국가산단 지정이 지역의 단기적 수요가 아니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추진방안 검토
 - 더 나아가, 국내외 산업입지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방향 등을 검토
- ☞ 기존 국가산단 공급방식의 한계 및 정책여건 분석에 기초해 국가산업단지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 추진

3. 용역 예산 :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주요 과업내용

1. 사업 내용

☐ 국가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개선과제

-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요와 추진현황 분석
- 기존 공급방식의 한계 및 개선과제 검토

☐ 산업단지 공급추세 및 중장기 수요 분석

- 지역, 업종, 입지유형, 공급방식 등을 구분한 산업입지 공급추세
- 중장기 수요전망에 기초한 국가산업단지의 공급 필요성 검토

☐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가산업단지의 공급방향

- 인구감소 및 불균형발전 대응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의 공급방향 검토
- 국가산단으로서 지역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주변지역 인프라 등 지원 방안
- 국가적 파급력이 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의 공급방향
- 기반시설(산업단지 내·외), 인센티브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방안
- 기타 산업입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산업단지 공급방안 검토
-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를 대비한 산업용지 여유부지 확보 방안

□ 국가산업단지 공급 방안

- 국가산업단지 공급 방식과 주요 내용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검토 사항
- 부처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방안
- 기타 제도개선 과제 및 시스템 구축방안

2. 사업 추진일정

세부내용 \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국가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개선과제						
2. 산업단지 공급추세 및 중장기 수요분석						
3.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가산업단지 공급방향						
4. 국가산업단지 공급 방안						
보고회	★ (착수)			★ (중간)		★ (완료)

III.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초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나. 사전 협의절차 이행

- 본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다. 설계변경

- 과업수행 중 천재지변,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설계변경으로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자문단 구성과 운영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마. 기타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경비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바.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 및 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계획에 의거 매월 전월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2. 자료보안 및 관리

- 수탁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위탁자의 요청 등 필요시에는 수탁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가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보고서 제출 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참여인원은 최소화하며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업무 참여자 교체 시 즉시 업무 접근권한을 해제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조사 자료에 대한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 최소부수만 제한 발행하며 추후 회수·파기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물 발행 시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철저히 분쇄하여 파기하거나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불량·파지 등은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감독관은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며, 과업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 과업 종사자 등이 과업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수탁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서

-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과업 착수 보고서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2)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수행 방법·과업수행자 명단·참여연구원의 인사기록·공정계획·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수시보고서

- 1)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다. 중간보고서

- 1) 과업착수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과업의 중간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서

- 1) 최종보고서의 인쇄원고는 연구종료 예정일 10일 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4일	5부	과업수행 계획포함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4개월 전	5부	그간 수행내용 및 향후계획
최종보고서(안)	과업완료 10일 전	5부	
최종보고서	과업완료 시	10부	최종보고회 보고내용 반영

IV. 사업자 선정방안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함)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접 수 처 :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 접수방법 : 전자제출
-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94)

3.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별로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업체 선정

□ 선정절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V.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 능 력 평 가 (80)	과업 수행 여건 (20)	기관평가 (10)	- 기관 예산규모(정부 출연금 포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10	계량
		과업수행 전문성(10)	- 해당분야 인력(박사급)의 보유수	10	
	기본 과업 수행 부문 (60)	국가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개선과제 (10)	-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요와 추진현황 분석	5	비 계량
			- 기존 공급방식의 한계 및 개선과제 검토	5	
		산업단지 공급추세 및 중장기수요 분석 (10)	- 지역, 업종, 입지유형, 공급방식 등을 구분한 산업입지 공급추세	5	
			- 중장기 수요전망에 기초한 국가산업단지의 공급 필요성 검토	5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가산업 단지의 공급방향 (24)	- 국가적 파급력이 큰 신산업 육성, 인구감소 및 불균형발전 대응을 위한 국가산단의 공급방향	13	
			- 기반시설, 인센티브 등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 기타 산업입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산업단지 공급방안 검토	11	
		국가산업단지 공급방안 (16)	- 국가산업단지의 공급방식과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검토 사항	9	
			- 부처 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방안, 기타 제도 개선 과제 및 시스템 구축방향	7	

나.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 계량평가(20점)

○ 기관평가 (10점)

- 기관 예산규모 (5점)

구 분	100억원 초과	5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점 수	5	3	1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 (5점)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점 수	5	3	1

○ 과업수행 전문성 (10점)

구 분	해당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보유수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하
점 수	10	7	5	3	1

※ 도시계획, 법학, 경제 등 관련 전공 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연구참여와 무관)

□ 비계량평가(60점)

- 평가세부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고 아래 배점기준 적용

평가요소 구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요와 추진현황 분석	5	4	3	2	1
기존 공급방식의 한계 및 개선과제 검토	5	4	3	2	1
지역, 업종, 입지유형, 공급 방식 등을 구분한 산업입지 공급추세	5	4	3	2	1
중장기 수요전망에 기초한 국가산단 공급 필요성 검토	5	4	3	2	1
국가적 파급력이 큰 신산업 육성, 인구감소 및 불균형 발전 대응을 위한 국가산단 공급방향	13	10.4	7.8	5.2	2.6
기반시설, 인센티브 등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 기타 산업입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산업단지 공급방안 검토	11	8.8	6.6	4.4	2.2
국가산단 공급방식과 주요 내용, 국가산단 지정 검토 사항	9	7.2	5.4	3.6	1.8
부처 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방안, 기타 제도 개선 과제 및 시스템 구축방향	7	5.6	4.2	2.8	1.4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2. 제안서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가격 평가(배점한도 20%)

VI.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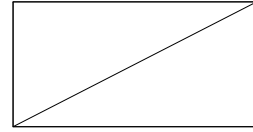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50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환대상임),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접 수 처 :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94)

VII. 양식 모음

1. 제안서 표지(서식 1)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서식 2)
3. 참여인력 요약 및 연구진 이력사항(서식 3)
4. 해당분야 인력(박사 학위) 보유현황(서식 4)
5. 보안서약서(서식 5)
6. 청렴계약서(서식 6)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자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경력	
과제 책임자							
연구진							
연구진							
연구진							
연구진							

주)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해당분야 인력(박사 학위) 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00.00.00			

* 본 연구 참여 연구진과 무관하게 작성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 회사명 :
- . 소재지 :
- . 직책(직위) :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